

동아대학교와 (주)세이코커피코리아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

동아대학교와 (주)세이코커피코리아는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상호 발전에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은 동아대학교와 (주)세이코커피코리아 간의 산학협력, 인력 양성 및 취업,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, 정보교류, 기타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등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의 내용) 동아대학교는 (주)세이코커피코리아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산학협력에 기반한 제품개발 및 연구시스템 구축
2. 기업 기반의 창의적 교육 및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공동 구축
3.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선도산업에 관한 산학협동연구
4. 산학협력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융합체제 실현
5.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
6.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과 관련된 산학협력활동
7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3조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필요시 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·결정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동의 없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 (효력발생) ① 이 협정은 양 기관의 서면 협의에 변경이 없는 경우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며, 이 협정의 효력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.
② 본 협정서는 2부를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7월 24일

동 아 대 학 교

총 장 한 석 정

한석정

(주)세이코커피코리아

대 표 심 제 훈

